② 도시민 기술교육(귀어학교 교육비)

I. 사업개요

1. 목 적

이 귀어귀촌 희망자가 어촌에 체류하면서 어업기술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는 귀어학교 교육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어촌정착 지원

-< 도시민 기술교육 개요 >-

(사업형태) 자치단체 경상보조 **(기간)** '22년~계속

(지원규모/조건) 귀어학교 8개소 1,600백만원/지특회계(국비 70%, 지방비 30%)

*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자체 자체 예산 추가 확보 가능하며 지자체 자체 추가 예산에 대한 교육비 외 지출 가능

(재원) 지역발전특별회계(3300-3447-300) 어촌소멸대응지원(귀어귀촌 촉진)

2. 근거법령

o 「귀농어·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7조(귀농어업인·귀촌인 정착지원)

3. 성과목표 및 지표

워크 키 포	2025	Ž	라근 4 기	내년 실	적	지표산출	호기비시
성과지표	목표치	21년	22년	23년	24년	시기	측정방식
교육수료생 귀어정착률(%)	30%	-	-	-	14.5%	'25.12월	귀어정착교육 졸업생('21~'23) 대상 귀어정착률 *어업경영체등록기준

4.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

(단위:백만원)

구 분	2025년	2026년	2027년	2028년	
합계	1,600	1,600	1,600	1,600	
- 국 비	1,120	1,120	1,120	1,120	
- 지방비	480	480	480	480	

II. 2025년 사업시행 주요내용

- 1. 사업대상자
- o 시·도
- 2. 지원대상,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등
- ① 지원대상
 - ㅇ 귀어귀촌 전문 어업 및 양식업 교육을 위한 귀어학교 운영자
- ② 지원자금의 사용용도
 - ㅇ 귀어학교 교육비
 - 강사비(원고료, 식비, 교통비 등을 포함한 금액)
 - 귀어학교 숙소 관리비(기간제근로자 인건비)
 - 실습어가 교육비, 숙식비, 현장실습비, 실습물품구입비 및 간담회비(다과)
 - 임차료(장소, 선박, 차량 등), 여행자보험·체험안전보험
 - 홍보비(유인물, 현수막 등),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컨설팅 비용
 - 교육 간접경비(시설장비유지비, 사무용품, 공공요금 등)
 - 하드웨어 교체비(책상, 침대 등 강의실, 귀어 숙소 비품 구입 등)
 - ㅇ 보조금 지출 범위
 - 귀어학교 숙소 관리비 : 총사업비의 5% 이내
 - 홍보비 : 총사업비의 15% 이내
 - 하드웨어 교체비 : 총사업비의 10% 이내
 - * 상기 지출범위 초과집행 필요시 해양수산부와 사전 협의
 - ㅇ 항목별 지출 기준
 - 일반 강사료 :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
 - 실습어가 강사료 : 200,000원 상한/1일
 - 교육장 선박이용료 : 100,000원 상한/1일(유류대, 실습용품 등 포함)
 - * 승선 실습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 100% 증액 지원가능(출항일지 첨부 필)
 - 숙박비 : 1인 기준 7만원 상한(현장실습어가에서 숙박은 1인 기준 4만원 상한)
 - * 현장실습 장소가 편도 30km 이내는 귀어학교 숙박시설 활용을 권장
 - 식 비 : 1만원/1식 상한(8천원을 초과시 증빙서류 제출)
 - ㅇ 무상교육이 원칙이나 교육 중도 포기자 방지를 위해 담보금* 등 조치 가능
 - * 담보금 30만원, 수료 및 미수료생에 대해 교육 후 담보금 반납. 다만, 미수료생은 1년간 귀어학교 교육생으로 선정 불가

- 3. 귀어교육 종류, 방법, 내용 등
- ① 교육의 종류
 - ㅇ 귀어정착교육, 귀어보수교육, 기타교육
- ② 귀어교육의 방법
 - 귀어정착교육 : 기술을 겸비한 성공적인 귀어정착을 위해 유통·가공과정 신설 및 귀어교육(현장체험·실습교육 포함) 기간 확대 추진
 - 교육방법(예시) : 과정별 교육기간 준수(총 5~9주 권고)

이론교육(1~2주)*		현장실습(3~5주)**		정착교육(1~2주)***
이론교육 50% 내외 현장견학 50% 내외	→	어선 • 양식장 등 창업 업종 현장실습 3~5주	→	창업과정 50% 내외 유통가공 과정 50% 내외 (일부기간 현장견학 가능)

- * 이론교육, 정착교육 : 1일 7시간 이상 편성[이론교육(정착교육 포함)]시 귀어귀촌종합센터,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등의 온라인교육자료를 활용하여 교육가능(교육시간의 50% 이내)
- ** 현장실습은 교육생 관심 업종별로 구분하여 교육장별 4~6명 배치 권장[교육생 귀어희망 지역(어촌계)이나 업종(어선협회, 양식장) 대표와 협의하여 매칭 현장실습 권장]
- *** 정착교육 기간 내 어촌계 봉사활동 등 융화프로그램 추진(1일, 교육시간인정), 교육수료자 중 희망자에 한해 자격증취득반(귀어연계 자격증에 한함) 추가운영 가능
 - **운영체계** : 귀어귀촌 교육 표준매뉴얼을 활용하여 교육생 모집·사전 준비· 강사 섭외·교육실행·사후관리를 체계적으로 실행
 - **안전관리** : 귀어귀촌 실습교육 안전관리체계를 현장 여건에 맞게 적용하여 안전관리 이행
 - 교육횟수 : 연간 2회 이상 추진
 - * 지역별 특성상 창업수요의 유형이 과반으로 나뉘는 경우에는 1차교육 양식업창업반, 2차교육 어업창업반 등으로 편성 장려(또는 1차교육 귀어종합반, 2차교육 어업창업반 등)
 - 교육인원 : 교육기수별 15~25명 수준
 - * 귀어학교 숙소 수용인원과 출퇴근 가능한 관내 교육생 인원을 고려하여 교육인원 선정
 - 교육생 선발 기준 : 신청자 중 귀어학교 졸업 후 귀어정착 가능성이 높은자와 청년 귀어자를 우선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평가 가점 마련
 - * 창업자금 선정ㆍ신청중인자, 어업기반 확보ㆍ진행중인자, 청년어업인, 청년귀어희망자 등
 - * 최근 2년 이내에 4주 이상의 귀어교육을 기수료(전국 귀어학교 등 조회)한 신청자는 후순위 선정
 - * 교육생 연령은 교육 공고일 기준 만 65세 이하로 제한(다만, 어업기반이 확보된 자는 기관 판단에 따라 만 66세 이상 선정 가능)

- ㅇ 귀어보수교육 : 변화된 기술 등을 교육하는 귀어자 등 보수교육 추진
 - 교육방법 : 신규기술, 유통·가공, 현장견학과정 등 적절히 반영
 - 교육횟수 : 연간 1회 이상 추진(과정별 기간 1~2주 권고)
- o 기타교육 : 귀어인-공동체간 소통·융화 프로그램 등 운영
 - 교육방법 : 귀어교육생(또는 귀어인)-어촌계 대표(또는 어선협회 등) 간 상호소통, 융화, 워크숍 등 운영
 - * 운영을 위한 버스 임차료, 식비, 만찬비, 홍보비 등 집행 가능

Ⅲ. 표준프로세스(SP)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

1. 사업계획수립

해양수산부

o 사업지침을 수립하여 시·도에 통보

시·도

ㅇ 자체 사업지침을 수립하여 귀어학교에 통보

2. 사업 신청 단계 및 자금배정 단계

귀어학교

- 이 귀어학교는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, 귀어학교 교육에 필요한 어업인,
 어촌계, 지역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도록 유도
- 귀어학교는 'II. 2025년 사업시행 주요내용'과 수료생의 귀어정착 향상 등을 고려하여 운영 및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시·도에 제출
 - * 귀어학교는 교육생 모집 시 관내 유입 예정자, 관내 거주자 등을 우선 선발금지

시·도

- 시·도지사는 사업계획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(별지 제1호 서식의 사업계획서와 함께 제출)
- ㅇ 귀어학교 운영 및 사업 계획을 검토하여 해양수산부에 승인 요청

해양수산부

- o 해양수산부는 시·도에서 신청한 보조금교부신청서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,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보
- ㅇ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
- ㅇ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정산시점 등
 - 지급기준 : 2회 이상 분할 교부
 - 정산방법 : 국고지급 보조금액 확정 및 정산처리

3. 사업시행 단계

귀어학교

- 이 귀어학교는 해양수산부에서 승인한 사업계획서의 일정대로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운영
- 이 귀어학교는 사업비의 20% 미만으로서 경미한 변경인 경우 자체적으로 변경 사업계획을 자체 변경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여야 함
 - 총사업비의 20%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변경
 - * 다만, 사업비의 변경기준은 연간 총사업비를 말하며, 20% 이상임에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 집행한 사업비는 '용도 외 사용'으로 간주

4. 이행점검단계

《이행점검》

- 귀어학교 사업계획에 의거 참여 어업인, 어촌계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, 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여하는 등 사업 부실화 방지 및 사업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강구
- 시·도 등은 사업에 참가한 어업인, 어촌계 등에 대한 보조금 지출 시, 사업 추진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소요예산 등을 파악한 후 보조금을 지급
 - 시·도 등은 사업기간 중 귀어학교 사업계획 이행여부를 지도·감독하고 사후 제출서류를 보완·관리
 - 프로그램(사업) 성격상 보조금의 선지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선지급할 수 있으며, 참여단체 및 기관 등은 사업완료 후 지출을

증빙하는 자료를 시·도 등에 제출토록 하여야 함

○ 시·도지사는 6월 말, 11월 말(추진 중인 실적포함) 및 사업 종료 시 기준 익월 10일까지 '도시민 기술교육 추진실적'(별지 제2호 서식)을 해양수산부에 제출

《사후관리 및 환류》

- 시·도지사는 도시민 기술교육 사업계획에 대한 추진실적, 사업취지와 부합 여부, 기타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 등을 점검
 -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(반기 1회 이상) 점검
 - 사업추진 과정상의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 지원
- o 해양수산부는 귀어학교 사업계획의 추진상황 및 각종 프로그램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, 문제점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
 - 필요 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귀어학교 교육 프로 그램 추진실적·성과, 사업추진 진척도 등에 대하여 컨설팅, 지도점검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(자료 요청 시 시·도는 증빙서류 등을 제출)
 - * 사업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및 패널티 부여 가능
- 해양수산부는 귀어학교 교육실적[귀어학교별 예산배정액 대비 교육인원 등], 수료생 귀어정착률[최근 3년간 수료생(직전년도 제외) 대상 어업경영체 등록 여부], 예산 집행실적, 교육실적 적기보고 이행여부 등을 평가하여 차년도 예산 배정에 반영
 - 귀어학교 교육비의 기준금액(2억원)에서 상위 1순위 학교 20%증, 상위 2순위 학교 10%증, 하위 2순위 학교 10%감, 하위 1순위 학교 20%감
 - * 평가 예시: 교육실적(40점)+귀어정착률(30점)+예산 집행실적(20점)+교육실적 적기보고(10점)

Ⅳ. 2025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

1. 2025년 사업수요조사

- o 해양수산부 사업담당자는 수요조사서의 수요 및 추진목표를 감안하여 차년도 예산안 검토
 - 차년도 사업은 당해연도 『도시민 기술교육』 선정 귀어학교를 우선지원

2. 2025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

ㅇ 당해연도 세부사업계획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

Ò

○○시·도 도시민 기술교육 계획서(작성예시)

1.	시·도의	일반현황 (관내	여건	분석,	인구변화	추이,	최근	3년간	귀어·귀촌	추이	등)
	Ó										

2. 귀어학교 비전 및 목표(현황, 필요성, 비전 및 목표 제시)

- 0
- _
- 0
- 3. 귀어학교 교육 추진계획
 - 이 사업시행자 : ০০০
 - ㅇ 세부계획별 구성 및 추진일정

(단위:백만원)

		വരിച്ചി	추진일정											
구 분	프로그램 명	사업예산 (국비+지방비)	1	し 분フ	1	2	분기	1	3	是 フ	1	4	분기	1
		(7-11/4 8-1)	1	2	3	4	5	6	7	8	9	10	11	12
계														
	소 계													
	소 계													

ㅇ (세부사업(프로그램)별 추진계획)

(단위 : 천원)

프로그램 명	차 수	(국미+시앙미)								
		(-1	교육기간	교육반 종류	교육기간	교육인원				
계										
	소 계									
귀어정착 교육	1차	예시	~	종합반	6주(현장3주)	20				
	2차	예시	~	어선반	6주(현장3주)	20				
	소 계									
귀어보수 교육	1차	예시	~	보수교육	1주(현장2일)	30				
기타 교육	소계									
(소통 융화워크숍)	1차	예시	~	워크숍	2일	30				
기타(공공요금)			(계획)							
기타(홍보 등)			(계획) 홍보내용, 방법 등 명시							
기타(숙소관리)			(계획) 인원, 기간 등 명시							
기타(하드웨어)			(계획) 세부 가구	, 전기제품, 비	품 등 수량 표	[7]				

- * 교육반 종류 : 양식반, 어선반, 종합반 표시
- * 프로그램 사업비의 합계금액은 총 사업예산과 일치, 홍보, 숙소관리, 하드웨어 항목은 별도로 구분 작성
- (세부사업(프로그램)별 추진계획)

ㅇ 지역사회단체 및 기관 등의 참여내용

구분	위탁 단체·기관	대표자	역할 내용	주소

4. 도시민 유치를 위한 다양한 연계 시책 활용 방안

Ò

_

[별지 제2호 서식]

도시민 기술교육 사업 추진실적 보고(반기)

1. 사업주체 : ㅇㅇ귀어학교

2. 사업기간: '00.00.00~'00.00.00

3. 사업예산 집행내역

0 총 괄

(단위 : 천원)

그 ㅂ			비고	
구 분	계	국비	지방비	비고
교부결정액				
집 행 액				
집행잔액				

ㅇ 세부 프로그램별 추진현황(국비기준)

(단위: 천원, %)

714	÷1 □	क्यान्य को	사업비			집행액			
구분	항목	프로그램 명	(국비) (A)	1분기	2분기	3분기	4분기	계(B)	(%) (B/A)
힙	- 계								

4. 세부 프로그램별 추진실적

① 세부 계획별 일정 및 추진실적

구 분	월	추진실적	비고
세부사업계획 수립	0월중	·세부사업계획 수립(0.00) ·	
	0월말		
	0~0월		
사업성과 결과보고	0월		

② 세부사업(프로그램)별 추진실적

(단위 : 천원)

프로그램명	차 수	집행예산*	추진일정								
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	<i>^</i> (⁺	(국비+지방비)	교육기간	교육반 종류	교육기간	교육시간	수료인원				
계											
	소 계										
귀어정착 교육	1차	예시	~	종합반	6주 (현장3주)	240	20				
	2차	예시	~	어선반	6주 (현장3주)	240	20				
	소 계										
귀어보수 교육	1차	예시	~	보수교육	1주 (현장2일)	40	30				
기타 교육	소 계										
(소통 융화워크숍)	1차	예시	~	워크숍	2일	16	30				
,			()] = 1)								
기타(공공요금)			(실적)								
기타(홍보 등)			(실적) 홍보내용, 방법 등 명시								
기타(숙소관리)				, 기간 등 🛚							
기타(하드웨어)			(실적) 세부	· 가구, 전기	제품, 비품	등 수량 표	.フ]				

^{*} 하반기 집행예산 보고시(11.10.까지)에는 12월 말 기준으로 작성(진행 중인 사업예산 포함)

③ 귀어학교 수료자 귀어 실적

구 분	수료자							
一 七	2021년	2022년	2023년					
계	150	명	명					
양식 부문	명	명	명					
어업 부문	西の	玛	명					
기타	玛	명	명					

* 어업경영체 등록 기준

④ 귀어 졸업자 명단('21~'23년)

연도	구분(어업/양식)	성명	생년월일
2000	어업	홍길동	1985-02-01

5. 사업 추진실적·성과 및 문제점(부진원인)

- ① 프로그램명
 - o (사업실적·성과)
 - o (문제점·부진사유)
 - ㅇ (만회대책)
- ② 프로그램명
 - o (사업실적·성과)
 - o (문제점·부진사유)
 - ㅇ (만회대책)

6. 사업별 추진실적 사진자료

<'00.00.00 >	<'00.00.00 >
<'00.00.00 >	<'00.00.00 >